국가공간전략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 플랫폼 「미래국토전략포럼」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참여 기관)은 지속 가능한 미래국토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범국가적 협력 플랫폼 「**미래국토전략포럼**」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배경)

본 협약서는 2026년 7월 20일에 체결된 제1차 업무협약(이하 "제1차 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됩니다.

제1차 협약에 따라 이미 체결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추가 참여기관이 제2차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목적)

본 협약은 참여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통합적 국토 의제를 형성하고 공간전략의 재편을 통한 공동 어젠다 발굴 및 원활한 협력을 위한 미래국토전략포럼을 설립하여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협력분야) ① 참여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교류하고 협력한다.

1. 국토 공간 전략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학술-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천적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
2.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공동연구, 정책 제안,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3. 향후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 창출
4. 국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논의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국토 비전을 제시
5. 기타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 협력 분야의 추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참여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비용 분담)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참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협약의 준수) 참여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참여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은 협약 해지에 합의하거나,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7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①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참여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참여기관은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참여기관은 일방의 비협력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사항) 참여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협약이 기간 만료,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제10조(협약서 교환)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협약 내용의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참여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1월 12일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준 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Korean Peninsula Population Institute for Future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이 인 실

KRIHS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장 임 재 만

KIET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장 권 남 훈

kr Clean & Green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 인 중